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안내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주택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 도입, 특공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1.11.16.자로 시행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 사전청약 제도 도입**)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및 세부절차(모집승인, 사전당첨자 선정, 최종 의사확인 등) 마련

*** 민간 사전청약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2] 사전청약 관련 참고자료 참조**

②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

*** 전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건축물, 토지) 가액의 합계가 3.3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

③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7→10%(공공택지는 15→20%)로 확대하고,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1인 가구도 포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

***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건축물, 토지) 가액의 합계가 3.3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3. 이상과 같이 공급규칙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차질없이 업무수행 하시길 바라며, 각 기관에서는 개정령 및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1부.
2. 사전청약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대전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광주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강원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부동산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 주무관 | **이전욱** | 행정사무관 | **남일** | 주택기금과장 | 전결 2021.11.17. **배성호** |
|---|---|---|---|---|---|

협조자

시행 주택기금과-12135 (2021. 11. 17.)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343 팩스번호 044-201-5530 / bejw@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